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75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오기형・김남근・복기왕

진성준 · 차규근 · 박홍배

이기헌 • 박민규 • 박해철

정일영 · 오세희 · 안도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시한이 규정되어 있음.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조세법률안의 경우 통상 매년 9월 초 제출되는데, 그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위원회의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수 있음.

이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

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제1항 중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를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를 "예산안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	자동 부의 등) ①		
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u>한도액안(이하"예산</u>	<u>한</u> 도액안(이하		
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	"예산안등"이라 한다)의		
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			
<u>률안의</u> 심사를 매년 11월 30일	.		
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	② 위원회가 <u>예산안등에</u>		
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			
<u>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u>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u>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u> 대하			
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			
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			
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u><삭 제></u>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			

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 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 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 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 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 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지정된 것으로 본다.

<u><삭 제></u>

<삭 제>